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 -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여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점용료의 감면 조항 삭제(안 제7조)

- 「도로법」 제42조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,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점용료의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, 자치구 조례에 점용료 감면 규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

####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

- 「도로법」등 이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

####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개정근거

「도로법」 제42조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,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5조

#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**6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 : 2013. 10. 17. ~ 2013. 11. 6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3.12. 5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시행규칙에 따라”로 하고, “부과 · 징수에 관하여 필요”를 “부과 · 징수에 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8조제5항제9호”를 “제28조제5항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”을 “광고판, 사설안내표지판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”를 “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”를 “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”로, “생활정보지회사”를 “생활정보지 회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

제3조 중 “제41조제2항”을 제41조제3항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  
제4조제1항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각각 “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월”을 “3개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80조”를 “제80조제1항”으로, “점용료 및 변상금”을 “점용료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점용료 및 변상금”을 “점용료 등”으로, “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”를 “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80조”를 “제8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후단 중 “제21조 및 제22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4항 중 “1회에 한하여 재 위탁”을 “한 차례만 재위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2 중 “관하여는”을 “관하여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중 “10.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(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·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)”을 “10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<u>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, 점용료·변상금, 과태료 및 수수료의 <u>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</u>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시행규칙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 부과·징수에 필요----- -----.</p>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·그 밖의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라 한다) <u>제28조 제5항 제9호</u>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광고탑, <u>광고판</u> <u>시설안내표지판</u>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</li> </ol>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 <u>제28조 제5항 제10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<u>광고판</u>, <u>시설안내표지판</u> 및 ----- -----</li> <li>2. ----- <u>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</u> 및 ----- ----- <u>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</u>-- <u>생활정보지 회사</u>-----</li> </ol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<u>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</u>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. 다만, <u>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</u>는 <u>생활정보지회사</u>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</li> </ol>	

에 한한다.

3. 차양시설 · 비가리개시설(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· 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)의 도로점용허가
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.

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)  
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,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·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
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-----

제41조제3항 -----

----- 따른다.

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)

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 자에게-

-----

자에게-----
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·징수하고,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,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,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

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,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.

##### ⑤ (생 략)

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. 다만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

----- 3개월 -----

④ -----

----- 1개월 -----

#####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-----  
----- 제80조제1항 -----  
-----  
----- 점용료 등 -----  
----- .

② ----- 점용료 등 -----

----- 제30  
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  
자를 붙여야 -----  
----- 제80조제1항 -----

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  
를 붙이지 아니한다.

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  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 
할 수 있다.

1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 
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 
립된 법인으로서 「도로법 시  
행규칙」 제24조에서 정하는  
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 
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 
사업

2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  
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  
리목적이 아닌 경우

3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 
미치는 공역사업으로서 전기  
공급시설 · 전기통신시설 · 송  
유관시설 · 가스공급시설 · 열  
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 
시설로서 「도로법 시행규  
칙」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  
는 사업

4.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 
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

-----  
-----.  
<삭 제>

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 
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 
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
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 
면제

2.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  
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

3.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
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  
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  
령이 정하는 비율, 시장 또는  
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  
료를 감면

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  
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 
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 
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  
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 
의한다.

1.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  
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  
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

2.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 
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

### 3.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

제8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② (생 략)

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~ ③ (생 략)  
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생 략)

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#### ③ (생 략)

제8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

촉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.  
-----  
---- 제21조  
--.

#### 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 한 차례만 재위탁  
--.

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#### <삭 제>

#### 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준용규정) 점용료 · 변  
상금, 가산금의 부과 · 징수 등에  
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 
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 
예에 의한다.

#### 별표 1

#####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원)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0.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 (시장환경개 선사업이 필요 요하다고 구 청장이 지정 공고한 끝목 형재래시장 중가설건출 물허가대상 시설물)	(생 략)	(생 략)	

제11조의2(준용규정) -----  
-----  
- 관하여 -----  
-----  
---- 따른다.

#### 별표 1

#####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원)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0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 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 개시설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시설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